

진명고향마을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진명고향마을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이하 ‘CCTV’라 한다.)”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진명고향마을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진명고향마을에 설치하는 CCTV는 수급자의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원장 김현석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조석호, 주임 구명본, 간호과장 김민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해당 없음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진명고향마을 CCTV 설치 운영,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진명고향마을 CCTV는 별지 제1호와 같이 총 72대를 설치하며 설치장소(촬영범위)는 각호와 같다.

1. A·B동 침실 37대, 생활실 복도 12대, 프로그램실 4대

2. A·B동 출입구 및 데크 8대

3. 기타 : A·B동 엘리베이터 2대, 정원 및 주차장 2대,

B동 지하 프로그램실 1대, 식당 1대, 특별침실 1대, 복도 2대,

A동 사무실 복도 1대, 물리치료실 1대

②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 및 상담실, 시설 내·외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 상담실(비밀번호 설정으로 장비접근 불가)

2. 디지털 녹화기 : 시설 내·외

3. 그 밖의 부대장치 : 사무실(시건장치 설치로 장비접근 불가)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진명고향마을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Full-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 장소에 따라 동작감지 또는 시간대 설정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200만 화소 이상(1,920*1,080), 초당 15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N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상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8조(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① CCTV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촬영 시간·설치 장소(촬영 범위)

2.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설치업체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과 부착장소는 각호와 같다.

1. 규격 : 세로 210mm × 가로 297mm

2. 부착장소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 출입구, 시설 내 안내 게시판 등)

제3장 영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9조(CCTV 운영자의 금지행위)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4. 법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제10조(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또는 관계공무원)이 수급자의 안전업무수행(노인안전사고예방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범죄수사기관에서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1조(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절차 등) ① 책임자로부터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정보주체) :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별지 제2호) 또는 의학적 소견서
2. 보호자 :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별지 제2호) 또는 의학적 소견서,
정당한 요구권 유무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열람케 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관계공무원)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신분증 및 공문서)
4. 수사기관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영장 또는 공문서)
5. 노인보호전문기관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신분증 및 서류)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은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열람·제공 구분
2. 이용·열람·제공 일시 및 장소
3. 이용·열람·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4. 이용·열람·제공 목적 및 사유
5. 그 밖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1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영상정보 보호 조치) ①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은 책임자가 지정한 자(중간 관리자 등)로 제한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영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7호 서식의 CCTV 설치·운영 관리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영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CCTV 설치장소(촬영범위)

연번	NVR1	NVR2	NVR3	NVR4	NVR5
1	A202호	A301호	B101호	B201호	A1 사무실 복도
2	A203호	A302호	B102호	B202호	A1 물리치료실
3	A204호	A303호	B103호	B203호	B지하 식당
4	A205호	A304호	B104호	B204호	B지하 복도 (강당 방향)
5	A206호	A305호	B105호	B205호	B지하 복도 (세탁실방향)
6	A207호	A306호	B106호	B206호	B지하 출입구 (강당방향)
7	A208호	A307호	B107호	B207호	B지하 프로 그램실(강당)
8	A209호	A308호	B108호	B208호	B지하 특별침실
9	A2 복도 (203호 앞)	A309호	B109호	B209호	
10	A2 프로그램실	A3 복도 (303호 앞)	B110호	B210호	
11	A2 복도 (204호 앞)	A3 프로그램실	B1 복도 (101호 앞)	B2 복도 (201호 앞)	
12	A2 복도 (207호 앞)	A3 복도 (304호 앞)	B1 프로그램실	B2 프로그램실	
13	A2 응급문 출입구	A3 복도 (307호 앞)	B1 복도 (103호 앞)	B2 복도 (203호 앞)	
14	A2 테크 출입구	A1 주출입구 (신발장쪽)	B1 복도 (107호 앞)	B2 복도 (207호 앞)	
15	A2B2 복도의 정원계단출입구	A1 비대면면회실 출입구	B1 테크 출입구	A동 엘리베이터	
16	주차장	정원(연못쪽)	B1 정원 출입구	B동 엘리베이터	

*동작감지기능 및 시간대 설정 장소 :

1. 녹색 표시 : 24시간 동작감지기능 설정
2. 주황색 표시 : 주간시간 이후 22시~익일 6시까지 동작감지기능 설정

[별지 제2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청구영상 설치장소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진명고향마을 원장 귀하</p>				

[별지 제3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제한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진명고향마을 원장

[별지 제4호]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 적 사 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p>「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진명고향마을 원장 귀하</p>					

[별지 제5호]

번 호	정 정 (삭 제) 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p>1.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p> <p>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진명고향마을 원장</p>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열람·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담당자		비고
								성명	서명	
1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작 성 요 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 ~ ’ 까지

번호	점검일자	성능 및 촬영기간 삭제주기	안내판 설치 장소	영상정보저장장치		모니터 관리		담당자 명		조치사항 등
				정상 작동여부	잠금장치	화면 유출	외부 유·무	잠금장치	성명	
1	'23.6.29	60일 정상	확인 √	확인 √	확인 √	무	확인 √			
2										
3										
4										
5										
6										
7										
8										
9										
10										